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부터 운영·평가까지 행정절차 흐름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및 특구 지정·운영 업무의 위탁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구 지정·계획변경 단계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 특구에 대한 우대조치 및 성과가 미흡한 특구의 구조고도화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성과 중심의 특구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 체계 전면 정비(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기존 4장 17조로 구성된 조문을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칙, 위원회 운영, 지정·변경, 운영·관리, 성과평가·포상, 업무위탁 등의 행정 절차 순서에 따라 20개 조문으로 재배열

- 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등 기존 3개 별지서식을 특구계획 사전 검토의견서, 구조고도화계획, 운영상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7개 서식으로 정비

나. 법령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3조, 제6조 및 제18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대면·서면 회의, 대리출석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할 재원 확보,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 특화특구의 지정·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

다. 특구 지정·변경 절차 내실화(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 또는 특구계획 변경 신청 전에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특화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범위를 명확화
- 특구 지정 또는 특구계획 변경 시 특화사업의 실효성, 사업 추진 기간 및 성과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의 적정성을 검토 하도록 규정
- 특구가 법률상 지정해제·계획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치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성과평가 결과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특구에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부진' 등급 또는 '미흡' 등급을 연속하여 2회 받은 특구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 필요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라. 현장 중심의 특구 운영·관리체계 강화(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특구운영상황 조사 주체에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포함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1:1 전담관 운영, 현장점검, 특구 지정·변경 사전검토, 성과평가 실적 교차검증 및 신규 규제특례 수요 발굴 등의 역할을 명확화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재정 지원정책에 대한 우선 지원을 요청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우선 고려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

마. 성과평가 체계 및 우수 특구 우대조치 정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특구 운영성과 평가를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대국민 평가의 3단계로 실시하고, 평가등급을 '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의 5단계로 구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량평가 실적과 증빙자료를 교차 검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특구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 또는 평가 가점 등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
- 특구 운영성과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전담조직·전문인력 등 인적·물적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한 운영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

바. 그 밖의 운영기준 정비(안 제19조 및 제20조)

- 특구 지정·변경 심의 및 운영성과 평가 등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등 특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키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yjang0104@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팩스 : 044-204-759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전화 044-204-7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 1부. 끝.